

FTA의 소비자후생 증대유형 및 사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ypes of and Cases Involving Increasing Consumer Welfare Due to FTA

박성용(Sung-Yong Park)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김석철(Suk-Chul Kim)

경원대학교 무역학과 교수(교신저자)

목 차

I. 서 론	V. 결 론
II. FTA의 추진 동향과 소비자후생 효과	참고문헌
III. 소비자후생 증대유형 및 사례 분석	Abstract
IV. FTA효과 반감 요인	

Abstract

It is well known that FTA increases consumer welfare. However, it is difficult to analyze consumer welfare effects of FTA for item by item because of the difficulty in data collection. In this respect,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types of increasing consumer welfares with item by item.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tudy, there are five types of consumer welfare increased by FTA, and the items are like below: banana, kiwi, octopus, wine, and etc. However, it is hard for consumer to feel effects of FTA directly for several reasons. The problem of distribution structure of imported goods and, tariff reductions over long period are parts of the reasons to reduce the consumer welfare effects. And the lack of consumer awareness about imported goods also reduces them.

In order to promote FTA more efficient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must improve the problems mentioned because consumer consent is essential element for further FTA promotion.

Key Words : FTA, Consumer Welfare, Type of Increase Consumer Welfare

* 이 연구는 2010년도 경원대학교 지원에 의한 결과임.

I. 서론

WTO 체제 출범이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기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도출의 어려움 때문에 쌍무 간 자유무역협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4년에 처음으로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 이하 FTA라고 함)을 발효하였으며, 이후 싱가포르, EFTA, ASEAN 등과도 FTA를 발효하였다. 최근에는 미국 및 EU, 페루 등과는 FTA를 체결하고 발효를 준비 중이며, 중국과는 공동연구가, 호주, 뉴질랜드 등과는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가 칠레와 FTA를 처음 체결할 당시에도 농수축산업자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칠레의 경제규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이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과의 FTA 협상 당시에는 농축산업자 등 일부 산업분야에서 반발이 극심하였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감 등으로 인하여 2008년에 촛불 시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FTA 추진과정에서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FTA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FTA가 생산자 측면에서는 이익이 되는 분야와 피해를 보는 분야가 공존하지만, 소비자 측면에서는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킨다. FTA로 인한 관세인하는 생산자잉여를 소비자잉여로 전환시키고, 정부의 관세수입도 소비자잉여로 전환시키며, 새로운 무역을 창출하는 등의 이유로 소비자잉여가 종전보다 증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FTA가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소비자측면에서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은 향후 정부의 FTA 정책의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측면에서 FTA가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모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에서도 FTA 추진과정에서 국가별로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동 모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모형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는 매우 유용하지만, 데이터의 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특정 품목에 대한 FTA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FTA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며, 실제 소비생활과정에서 FTA의 경제적 효과를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를 중심으로, FTA 체결이후 교역이

증가한 품목을 중심으로, FTA가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유형과 유형별 사례를 품목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FTA의 경제적 효과를 거시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와는 달리, 소비자들이 실제 소비생활에서 FTA가 어떠한 이익을 주는지를 피부적으로 느끼게 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서, 일반 소비자도 쉽게 FTA의 경제적 효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품목별 분석대상은 현재 우리나라가 FTA를 발효하여 교역 중에 있는 국가인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등과의 교역품목 중에서 FTA체결 이후 교역이 증가한 품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II. FTA의 추진 동향과 소비자후생 효과

1. FTA 추진 동향

최근 국제통상환경은 전통적으로 GATT/WTO의 틀 속에서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하던 다자주의에서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지역주의로 중심의 축이 전환되었다. 우리나라도 FTA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4년에 처음으로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을 외국과 비교하면,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FTA의 경제적 효과, 산업발전에의 기여, 취약산업에 대한 민감도, 외교·안보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FTA추진상대를 선정하되, 거대경제권을 중심으로 동시에 발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추진전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단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FTA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주요국의 FTA 추진 현황

국가	기 체결 FTA	추진중 FTA	검토중 FTA
미 국	NAFTA, CAFTA-DR, 모로코, 바레인, 칠레 등 14개	FTAA, SACU, 말레이시아 등 6개	뉴질랜드, 대만, 베트남 등 6개
E U	멕시코, 시리아,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등 23개	리비아, ASEAN, 몬테네그로 등 20개	싱가포르, 일본 등 4개
칠 레	EU, CACM, 멕시코, 한국, 미국 등 20개	FTAA, 베트남 등 5개	뉴질랜드, 태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EFTA, EU, 칠레, 일본 등 14개	FTAA, 싱가포르, 파나마 등 5개	뉴질랜드, 중앙아메리카, 호주
중 국	ASEAN, 뉴질랜드, 칠레 등 8개	GCC, SACU, 호주 등 6개	MERCOSUR, 남아공, 한국, 인도, 스위스, 대만
일 본	ASEAN,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11개	GCC, 인도, 페루, 호주	EU, 뉴질랜드, 한국 등 6개
한 국	ASEAN, EFTA, 싱가포르, 칠레, 미국, EU, 인도, 페루 등 8개	GCC,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 호주	MERCOSUR, SACU, 러시아, 일본, 중국, 콜롬비아, 터키, 한중일

자료: 대한무역협회

2.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방법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일반균형 분석(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 CGE) 모형이며, 다른 하나는 부분균형분석모형이다. CGE 모형은 일정시점에서의 데이터에 기초하여 경제행위를 설명하는 방정식체계를 구축함으로써 FTA의 체결 등으로 발생한 내생변수의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이다. 특히, FTA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데는 세계적으로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모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동 모형은 국가별, 산업별로 통계를 이용하여 일반균형론적 관점에서 정량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다지역·다부문 CGE 모형이다. CGE 모형은 모형화(modeling)의 전통에 따라, 시장경쟁정도에 따라, 동태성 여부 등에 따라 여러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CGE모형은 일반균형모형의 기본적인 장점인 이론적 정교성과 경제 전체와 개별 산업에 대한 동시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 국가 및 산업의 포괄범위가 넓고, 연구목적에 따라 국가와 산업의 포함범위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도록 패키지가화되어 있어 범용성이 크다는 장점

이 있다. 이에 따라 동 모형은 분석결과에 대하여 통계적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 소비자선호와 생산자의 기술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점, 경제 주체자인 소비자와 생산자가 정부정책의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고, 자신들의 현재의 경제행위에 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의 효과가 예상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서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¹⁾

부분균형분석모형에는 중력모형과 탄력성분석방법 등이 있다. 중력모형은 물리학의 개념을 도입한 이론으로, 두 국가 간 무역규모는 양국 간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경제규모에 비례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국가 간 정상적인(normal) 무역규모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초기 중력모형은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의 부족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Anderson (1979)에 의해 이론적 기초가 마련되면서 동 모형을 통한 실증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 모형은 비교적 간단한 모형을 설정하여 몇몇 소수의 내생변수를 집중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며, 표준통계방법의 기준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FTA 등과 같은 거대한 정책변화가 가져오는 복잡한 효과를 모두 분석하지 못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²⁾

한편, 탄력성분석방법은 상품별로 시장의 독립성을 가정하고, 단일의 방정식모형에 입각하여 상품별 수입의 가격탄력성을 측정하고, 이를 기초로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분석방법은 소비자입장에서 FTA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를 품목별로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FTA에 의해서 소비자후생이 증대하는 사례를 품목별로 분석한다는 것은 상품별로 독립적인 시장을 가정하고, 동 시장에서 소비자잉여가 증대되는 사례를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FTA로 인한 소비자후생증대효과를 탄력성분석방법에 따라 간단히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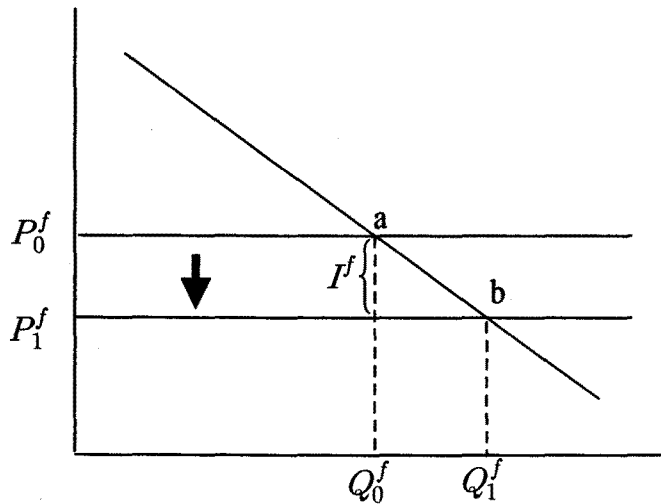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FTA로 인한 소비자후생증대효과는 수입상품이 국내 상품과 동질적인 경우(homogeneous goods)와 이질적인 경우(heterogeneous goods)에 따라 접근방법에 차이가 있다. 동질적인 경우에는 소비자잉여가 무조건 증가하며, 증가된 소비자잉여분이 감소한 생산자잉여분보다 많기 때문에 사회총잉여도 종전보다 증가한다. 반면에, 이질적인 경우에는 수입상품 관세인하로 인한 소비자잉여 증대효과와 국내 상품의 수입상품으로의 대체로 인한 국내 상품의 가격하락과 거래량 감소로 인한 소비자잉여 감소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입상품은 국내상품과 서로 대체재의 관계에 있다.

1) 우리나라에서 CGE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박인원(2001), 정인교(2003), 이홍식(2004) 등이 있다.

2) 중력모형을 이용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함시창(1996), 윤진나·손찬형(2000), 박재진(2003), 최봉호(2005) 등이 있다.

여기서는 수입상품이 국내상품과 동질적이라고 가정하고, FTA의 소비자후생증대효과를 비교정태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살펴본다.³⁾ 본 모형에서 수입상품의 국내수요함수는 선형을 가정한다. 이는 수입상품의 국내시장 수요곡선 D는 불변탄력성(constant elasticity of demand)을 가진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입상품의 국내공급함수는 수평의 선형을 가정한다. 이는 수입상품의 시장 공급곡선이 완전탄력적임을 의미한다.⁴⁾

아래 그림은 FTA 체결로 인한 관세인하가 소비자가격을 인하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FTA로 인한 관세인하(철폐)는 수입상품의 공급곡선을 관세인하금액만큼 아래로 평행 이동시키므로, 수입상품의 국내시장가격은 P_0^f 에서 P_1^f 로 하락하며, 수입량은 Q_0^f 에서 Q_1^f 로 증가한다. 따라서 FTA로 수입상품에 대한 소비자 잉여는 $\square P_0^f P_1^f ab$ 만큼 증가한다.⁵⁾



[그림 1] 관세감축에 따른 소비자잉여증대 효과

- 3) FTA가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사실만 이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므로, 가장 간단한 모형을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4) 완전탄력적인 공급곡선의 가정은 소비자잉여의 추정치를 실제 값보다 크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수입상품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적기 때문에 실제 값과 추정치와의 차이는 미미할 것이다. 그러나 우상향 공급곡선을 가정한다면 실제 값은 추정치 보다는 작을 것이다.
- 5) 물론, FTA 체결국가로부터 수입한 상품의 국내시장가격은 관세인하만큼 하락하므로, 이와 경쟁관계에 있는 유사 수입상품의 수요곡선 이동도 가져온다. 그러나 이하 소비자후생 측정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위 그림에서 관세인하로 인한 소비자잉여 증대분은 $\square P_0^f P_1^f ab$ 의 면적이므로 소비자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begin{aligned} \text{○ 소비자잉여} &= (P_0^f P_1^f ab \text{의 면적}) \\ &= I^f Q_0^f + \frac{1}{2} I^f (Q_1^f - Q_0^f) \\ &= I^f Q_0^f \left(1 + \frac{1}{2} \frac{Q_1^f - Q_0^f}{Q_0^f} \right) \\ &= \frac{I^f}{P_0^f} P_0^f Q_0^f \left(1 - \frac{1}{2} \eta^f k^f \right) \end{aligned}$$

$$(\text{소비자 잉여}) = k^f P_0^f Q_0^f \left(1 - \frac{1}{2} \eta^f k^f \right)^6$$

여기서,

$\eta^f (< 0)$: 수입수요함수에서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

$k^f = (P_0^f - P_1^f) / P_0^f (> 0)$ 는 수입가격의 변화율

위의 산식에서 알 수 있듯이, FTA체결로 인한 수입상품의 소비자잉여증대효과는 수입수요함수에서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η^f)이 클수록, 수입상품의 국내시장가격 하락폭이 클수록, 수입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6) 여기서 관세율을 t 라 하고 관세가 철폐된다고 가정하면, 수입가격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k^f = \frac{P_0^f - P_1^f}{P_0^f} = \frac{t}{1+t}$$

그런데 수입가격의 변화는 공급이 무한정 탄력적인 시장에서는 두 공급곡선의 거리가 가격 차이와 동일 ($I^f = P_0^f - P_1^f$)하므로, $I^f / P_0^f = k^f$ 가 되므로, 소비자잉여는 위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Ⅲ. 소비자후생 증대유형 및 사례 분석

1. 분석 개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탄력성분석방법에서 FTA가 소비자후생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변화하는지의 여부는 수입상품의 국내수요함수에서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 관세인하 정도, 수입상품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후생을 구체적으로 측정하지 않고,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유형을 분석하고, 각 유형별로 대표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자후생이 증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먼저, 분석대상 상품군으로 ① FTA 체결이후 수입량이 많은 상품, ② 수입상품의 국내시장 점유비율이 높은 상품, ③ 소비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품, ④ 관련 통계자료 수집이 가능한 상품 등을 기초로 <표2>와 같이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FTA로 소비자후생이 증대되는 유형을 ① 국내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 소비가 가능한 경우, ② 국내 생산이 미미한 품목에 대하여 소비가 활성화되는 경우, ③ 국내 생산 비수기에도 낮은 가격으로 소비가 가능한 경우, ④ 소비할 수 있는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경우, ⑤ 수입상품의 국내시장가격이 인하되는 경우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소비자후생증대효과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상품을 상기 표에서 추출하여 소비자후생증대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표 2> 소비자후생증대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품목현황

품목코드	품목명	국내 총수입량 (A)	FTA체결 국기로부터 수입량 (B)	FTA 체결 국가의 수입 비중 (B/A)	국내 총생산량 (C)	수출량 (D)	총수입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A/C-D)	수입국수 (수입국명)
0806100000	포도	32,482,508	29,451,613	91%	329,000,000	429,515	9%	1 (칠레)
0307591030	주꾸미	19,448,042	18,210,923	94%	6,828,000	5,654	74%	6 (베트남 등)
0203291000	삼겹살	106,096,314	13,934,559	13%	142,707,000	1,050	43%	1 (칠레)
0307591020	낙지	31,167,648	6,117,302	20%	8,625,000	14,148	78%	6 (베트남 등)
2204211000	붉은 포도주 (2L이하 용기)	18,770,797	5,609,797	30%	-	54,567	-	3(칠레 등)

품목코드	품목명	국내 총수입량 (A)	FTA체결 국가로부터 수입량 (B)	FTA 체결 국가의 수입 비중 (B/A)	국내 총생산량 (C)	수출량 (D)	총수입이 국내시장 에서 차지하는 비중 (A/C-D)	수입국수 (수입국명)
0303740000	고등어	28,561,147	4,540,308	16%	143,776,000	40,099,660	22%	4 (칠레 등)
0307491010	감오징어	5,582,687	4,515,943	81%	3,252,000	1,147,232	73%	6 (베트남 등)
1804000000	코코야 버터 (지 또는 유)	7,828,493	4,305,376	55%	8658000	128,926	48%	4(필리핀등)
1512191010	해바라기씨유	12,155,182	3,405,795	28%	588,000	0	95%	2(싱가포르 등)
0303190000	연 어	7,565,749	3,223,004	43%	? 15000	831,481	-	2(칠레 등)
0810500000	키 위	29,085,185	2,540,296	9%	18,320,000	905	61%	1 (칠레)
1604302000	캐비아 대용물	2,574,742	1,644,119	64%	-	1,190,119	-	3 (노르웨이등)
0906110000	계피	1,721,196	1,269,517	74%	-	1,650	-	3 (인도네시아 등)
2008192000	코코넛	1,756,166	1,260,661	72%	-	15,100	-	5 (베트남 등)
1905901040	비스킷	15,314,610	1,259,861	8%	116,372,000	12,695,211	13%	6 (스위스 등)
0303799070	불 낙	4,799,667	1,104,115	23%	39,601,000	499,861	11%	2(노르웨이 등)
0303210000	송 어	916,231	916,143	100%	3,320,000	1,209,805	30%	2(칠레 등)
2204212000	흰 포도주 (2L이하 용기)	4,316,026	451,649	10%	-	13,007	-	2(칠레 등)
0910300000	심황(강황)	585,758	76,424	13%	216,000	4,531	73%	3 (미얀마 등)
0305410000	훈제 연어	49,903	31308	63%	-	9,209	-	3 (칠레 등)
2106909091	벌꿀조제품	83,593	14,028	17%	16,005,000	43,280	1%	2 (미얀마 등)
2204100000	발포성 포도주	731,756	11,302	2%	-	630	-	3 (칠레 등)

자료: 관세청 자료를 기초로 필자가 작성.

2. 소비자후생 증대유형 및 사례

1) 국내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품목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 가능

FTA가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국내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의 대표적인 품목으로 열대과일인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등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바나나를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본다. 7) 이

7) 무역자유화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FTA는 지역주의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그런데

는 최근 5년간 열대과일 총수입물량에서 바나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내외로 가장 많기 때문이다.

바나나 원산지는 인도 벵갈로와 말레이 반도로 추정되며, 고온 다습한 기후조건이 적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후는 바나나 생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산 바나나는 3중 비닐 하우스에서 8개월간 가온(加溫) 재배하여야 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생산비용 측면에서 수입 바나나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1991년부터 바나나가 농산물 개방품목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미하지만 다소 증가하였던 국내 바나나 재배면적이 급감하고, 지금은 수입바나나가 우리나라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다.

<표3>은 바나나의 국내시장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동 표에 의하면, 바나나의 국내시장 규모는 2008년도에 총 258,107,867Kg이 거래되었으며,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⁸⁾ 이에 따라 국내 바나나 시장규모도 열대과일로는 가장 큰 시장규모로 성장하였다. 주요 수입국으로는 1990년에는 대만이 전체 수입량의 68%를 차지하고, 나머지 32%는 필리핀이 차지하였다. 이는 당시 바나나가 자유무역대상이 아니어서, 대만으로부터 구상무역의 형태로 수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8년 현재 바나나는 거의 대부분인 99.8%가 필리핀에서 수입되고 있다.

<표 3> 바나나의 국내 시장규모

(단위:Kg)

	1990	1991	1995	2000	2005	2008
국내생산량	24,000	0	0	0	0	0
총 수입량	21,834	314,748	121,538,130	184,211,837	253,974,112	258,362,667
총 수출량	-	-	1,437,000	504,608	696,930	254,800
국내시장규모	45,834	314,748	120,101,130	183,707,229	253,277,182	258,107,867

* 국내시장규모 = 국내생산량 + 총수입량 - 총수출량

자료: 농촌경제연구원, 농업통계; 관세청, 수입통계에서 재구성

바나나는 우리나라에서 다자주의에 의해서 수입자유화가 된 대표적인 품목이므로 동 품목을 무역자유화로 인한 소비자유증대의 대표적인 품목으로 선택하였다.

- 8) 바나나가 무역자유화 대상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1990년의 경우,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이 거의 비슷한 규모였으며, 당시 수입은 구상무역 형태로 주로 대만으로부터 수입되었다. 따라서 국내시장규모는 1990년의 경우, 한 해 동안 총 45,834Kg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91년에 무역자유화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수입이 전년보다 10배로 급증하였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현재 전체 수입량은 258,362,667Kg에 이르고 있다.

바나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 1인당 소비규모도 점차 증가하여, 1990년에는 연간 1인당 바나나 소비량이 거의 제로(0)에 가까웠으나, 2008년에는 5.3Kg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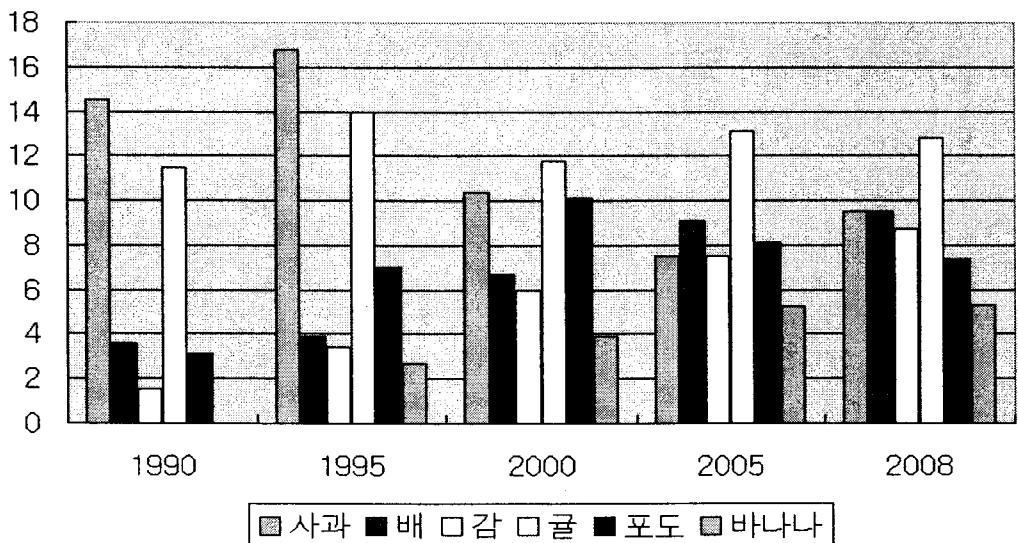
〈표 4〉 바나나 연간 1인당 소비량

(단위:Kg, 명)

	1990	1991	1995	2000	2005	2008
국내 총공급량	45,834	314,748	121,538,130	184,211,837	253,974,112	258,362,667
총 인구수	42,869,283	43,295,704	45,092,991	47,008,111	48,138,077	48,606,787
1인당 소비량	0.001	0.007	2.695	3.918	5.275	5.315

자료: 관세청, 수입통계; 통계청, 인구통계에서 재구성

1인당 연간 소비량이 5.3Kg이라는 규모는 국내에서 재배하는 과일인 사과와 배 등의 연간 소비량과 비교하여도 적은 것이 아니다. 2008년 현재 사과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은 9.5Kg, 배는 8.6Kg, 감은 4.8Kg 등이다([그림2] 참조). 이는 바나나가 우리나라 국민의 대표적인 과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 주요과일의 1인당 연간 소비량(Kg)

따라서 바나나는 FTA 대상품목에는 제외되어 있으나, 무역자유화로 국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 동안 소비하지 못하던 것을 소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후생을 증가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9)10)

52) 국내 생산 비수기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 가능

무역자유화가 소비자후생을 증가시키는 다음 유형으로 국내 생산 비수기에도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품목으로 포도와 키위를 들 수 있다. 여기서는 키위를 중심으로 이의 내용을 살펴본다. 키위의 최적 재배조건은 아열대지역에 평균기온이 15℃이고, 강수량이 1,300~1,500mm인 지역이다. 일반적으로 곁이 재배되는 지역에서는 기상재해를 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국내 키위의 주 출하 시기는 보통 11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이다. 그러나, 칠레산 키위는 4월에서 10월, 그리고 뉴질랜드산은 4월에서 12월까지여서 국산 키위와 출하시기가 많이 겹치지 않다([그림3] 참조).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국산												
미국												
뉴질랜드												
칠레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한·미 FTA대비 주요농산물 생산·가격·수출입자료

[그림 3] 국내산 키위와 주요 수입산 키위의 주 출하 시기 비교

키위는 칠레와의 FTA에서 포도와 같이 계절관세를 도입하지 않고, 2004년 41.4%의 관세율에서 매년 4.1%포인트씩 감축하여, 발효 11년차인 2014년에 완전히 철폐하기로 하였다.11)

9)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중 열대과일을 구입한 경험이 얼마나 되는가의 질문에 “아주 많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바나나가 97%, 오렌지가 92%, 키위가 86%, 파인애플이 85% 등으로 조사되었다.
 10)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FTA체결 국가는 아닌 멕시코, 미국 등으로부터 2000년대부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아보카도(2008년 현재 492톤 수입)와 망고(2008년 현재 1570톤 수입) 등의 과일도 바나나와 같이 우리 국민들이 즐겨 소비하는 과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11)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뉴질랜드산 키위에 대한 관세는 2009년 현재 45%이다. 그러나 5-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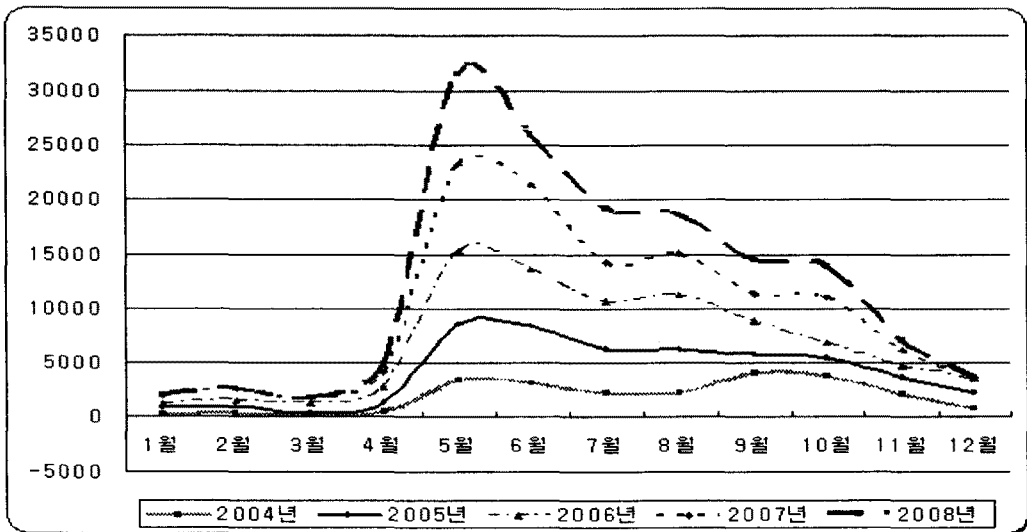
〈표 5〉 키위의 국내 시장규모

(단위: 톤,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내생산량(A)	10,490	12,775	14,811	15,274	17,600	17,400
총 수입량(B)	12,849	23,101	26,752	32,112	34,658	29,085
칠레 수입량(C)	1,536	2,131	5,932	8,595	6,852	2,540
칠레산 비율(C/B)	11.9	9.2	22.1	26.7	19.7	8.7
국내시장규모(D)	23,339	35,876	41,563	47,386	52,258	46,485
수입산 비율(B/D)	55.0	64.3	64.3	67.7	66.3	62.6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

키위의 수입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산 키위가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의 55.0%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국내 키위시장의 62.6%내외를 수입산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림 4]에서 보듯이, 칠레산 키위의 월별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생산 비수기인 5월에서 10월 사이에 거의 대부분이 수입되고 있다.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에서 정리

[그림 4] 월별 키위 수입량(단위:톤)

에는 칠레산이 전체 수입량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산과의 경합도 없다.

이러한 사실은 FTA로 인하여 소비자는 키워의 국내생산이 거의 생산되지 않는 비수기인 5월 이후에도 수입산 키워를 낮은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FTA는 기후조건 등으로 국내 재배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열대성 과일 등을 국내 생산 비수기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킨다고 할 수 있다.

3) 국내 생산이 미미한 상품의 수입으로 소비 활성화

FTA는 국내 생산이 미미한 제품의 수입으로, 당해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소비를 활성화시킨다. 밀, 사탕수수 등의 국내생산은 거의 미미하지만, 이들을 이용하여 제조한 상품인 빵, 라면, 과자, 설탕 등의 소비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다. 밀, 사탕수수 등의 수입이 제약을 받을 경우, 우리생활에서 생활필수품이 된 빵, 라면, 과자, 설탕 등의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¹²⁾여기서는 밀 등과 같은 원재료가 아니라, 직접 소비재로 사용되는 상품인 주꾸미의 경우를 살펴본다.

주꾸미는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일본·중국·인도·태평양 연안에 분포하고 있다. 주꾸미는 활 주꾸미와 냉동 주꾸미로 구분되며, 국내산은 주로 활 주꾸미시장을, 수입산은 거의 대부분 냉동 주꾸미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냉동 주꾸미가 사용되는 곳은 활 주꾸미와는 달리 주로 시푸드 레스토랑, 뷔페 식당, 급식 식자재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12월 주꾸미 주 서식지인 서해연안의 기름 누출사고로 인하여, 2008년에는 국내산 활 주꾸미의 어획량이 2007년도의 6,828톤보다 40.4% 감소한 4,075톤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 활 주꾸미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활 주꾸미의 공급부족이 다소 해소되고 있다.

냉동주꾸미는 2007년부터 ASEAN과의 FTA 발효로 베트남 등으로 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여, 2007년에는 전년보다 16.9% 증가한 19,678톤이 수입되었으며, 2008년에도 비슷한 규모로 수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주꾸미 시장규모는 FTA 발효 1차년도인 2007년에는 전년도보다 38.2%나 증가한 28,846톤으로 확대되었으며, 2008년에도 국내산 활 주꾸미의 감소분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12) 국산 밀로 만든 칼국수, 빵의 가격과 수입밀로 만든 제품의 가격을 비교하면, 국산 밀로 제조한 상품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높다. 그리고 국내산 밀의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내산 밀로만 라면이나 빵 등을 제조할 경우, 국내 소비자의 대부분은 현재와 같은 가격으로 이들 상품을 소비할 수 없다. 그러나 밀과 사탕수수의 수입이 FTA기 체결국가에서 많이 수입되지 않기 때문에 분석을 생략한다.

〈표 6〉 국내 주꾸미 시장 규모

(단위: 톤)

	활 주꾸미		냉 동	합 계
	국내산	중 국		
2000	4,569	419	6,770	11,758
2001	4,294	640	9,375	14,309
2002	3,911	1,433	10,535	15,879
2003	5,200	1,737	11,404	18,341
2004	5,048	1,837	14,637	21,522
2005	4,390	2,137	14,128	20,655
2006	4,032	1,801	15,025	20,858
2007	6,828	2,340	19,678	28,846
2008	4,075	2,626	19,448	26,149

* HS Code 변경으로 2006년 이전의 경우, 냉동주꾸미에 중국산 주꾸미가 합산되어 있어, 중국산주꾸미를 활 주꾸미로 추정하여 계산

자료: 관세청

냉동 주꾸미는 70% 이상이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감소하는 대신에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ASEAN 국가의 수입비중은 80%대에서 비교적 안정화되어 있다.

〈표 7〉 전체 냉동주꾸미의 한·ASEAN FTA 체결 국가의 수입비중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베트남	85%	83%	85%	77%	82%	72%	73%
말레이시아	1%	1%	2%	2%	0%	1%	1%
인도네시아	0%	1%	1%	3%	4%	6%	8%
합 계	86%	85%	88%	82%	86%	80%	82%

자료: 관세청

이에 따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냉동 주꾸미의 수입가격은 2002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FTA 발효 1차년도인 2007년도의 가격상승률은 예년의 가격상승률보다 낮은 8.5%로 나타났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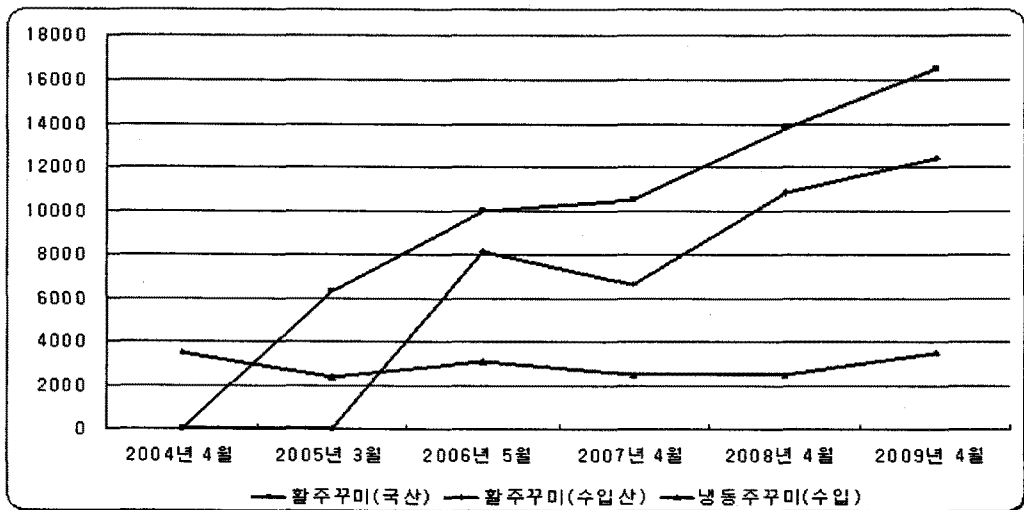
13) 그러나 2008년도에는 17.9%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서해안 기름 유출사고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표 8〉 냉동 주꾸미 연도별 수입가격 상승률

연 도	가격(US\$/kg)	상승률(%)
2002	1.31	-
2003	1.39	6.1%
2004	1.43	2.9%
2005	1.74	21.7%
2006	2.00	14.9%
2007	2.17	8.5%
2008	2.56	18.0%

자료: 관세청, 수입통계

이에 따라 FTA 발효이전인 2006년에는 국내산 활주꾸미가격 대비 냉동주꾸미의 가격비율이 31.1%로 나타났으나, FTA 발효이후에는 그 비율이 점점 감소추세에 있다. 특히, 냉동 주꾸미의 수입가격이 2005년에서 2008년의 3년 동안 47.1% 상승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환율도 평균 7.7% 상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동기간 동안 냉동주꾸미의 경락가격 상승률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주꾸미 시판가격 추이 비교

이러한 사실은 냉동주꾸미의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격이 높은 활주꾸

미의 소비를 거의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ASEAN과의 FTA체결은, 낮은 가격으로 주꾸미의 수입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국내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으로 주꾸미 소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후생을 증가시킨다.

4) 다양한 품목의 소비 가능

FTA 등으로 인한 무역자유화가 소비자후생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에는 없는 외국상품의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FTA 체결로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소비자후생증대의 유형으로 다양한 종류의 상품 소비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칠레와의 FTA 체결로 포도주의 수입선이 프랑스 등 전통적인 유럽시장에서 칠레로 전환되었으며, 칠레로부터 수입되는 포도주의 종류도 크게 증가하였다. 2002년에는 프랑스산 포도주의 경우 빈티지별로 225개 종류가 수입되었는데 비하여 칠레산은 12개 종류의 포도주만 수입되었다. 그러나 칠레와의 FTA 발효이후 칠레산 포도주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칠레산 수입 포도주의 종류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 비하여, 프랑스산과 미국산, 이탈리아산 등 다른 국가의 수입포도주 종류는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에는 칠레산 수입 포도주의 종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FTA로 인한 수입자유화가 다양한 상품의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9〉 국별 빈티지별 포도주 수입품목 수 추이(A사)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프랑스	225	242	535	486	466	153
칠레	12	40	75	137	210	187
이탈리아	55	164	223	251	201	83
미국	54	69	96	205	134	54

5) 수입상품의 국내가격이 하락

FTA로 인한 관세인하는 수입상품의 소비자가격을 인하시킨다. 칠레와의 FTA발효이후 칠레산 포도주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에는 환율 급등으로 다른 국가로부터 포도주 수입은 모두 감소하였으나, 칠레로부터의 포도주 수입은 증가하였다.¹⁴⁾이

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칠레와의 FTA 체결로 칠레산 포도주에 대한 관세가 다른 국가보다 낮아지면서, 포도주의 수입선이 칠레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표 10〉 주요국별 포도주 관세 현황

년도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미국
2002년	15.0	15.0	15.0	15.0	15.0
2006년	7.5	13.6	15.0	15.0	15.0
2007년	5.0	12.3	12.3	10.0	15.0
2008년	2.5	10.9	11.0	8.0	15.0

그런데 FTA로 인하여 칠레산 포도주에 대한 관세인하는 칠레산 포도주의 국내가격도 실질적으로 하락시킨다. 수입포도주의 유통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① CIF가격 ▶ 관세 ▶ 주세 30%(CIF+관세)의 30% ▶ 교육세 10%(주세의 10%) ▶ 폐기물 예치금 ▶ 수입원가 ▶ 국내 유통단계와 ② 국내 유통단계는 수입상(30%) ▶ 일반도매상(20%) ▶ 와인숍(30%)의 단계와 수입상(30%) ▶ 할인도매상(1.5%) ▶ 할인점(20%) 등의 단계가 대표적이다.¹⁵⁾

한편, 수입 포도주의 국내소비자가격은 대부분 유통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아래 표는 상기 유통구조와 칠레의 포도주 수입상의 실제사례에 기초하여, 동일한 칠레산 수입 포도주의 국내소비자가격 결정과정을 2005년과 2008년도를 비교하여 분석한 것이다. 이는 FTA로 인한 관세인하가 실제로 국내소비자가격을 실제로 하락시키는지 알 수 있게 한다.

동 표에 의하면, 2005년도에 칠레 원산지가격이 24\$인 포도주를 수입하면서, 통관과정에서 관세 3.6\$, 주세 8.38\$(27.6\$×0.3), 교육세 0.828\$(8.38\$×0.1)가 부과되어 통관 시 수입가격은 36.708\$이 되었다. 그런데 동일한 포도주가 2008년도에는 원산지가격이 27\$이었으나, 이를 수입하면서, FTA로 인하여 관세율이 2.5%로 감축되었으므로 관세가 0.675\$, 주세가 8.302\$(27.675\$×0.3), 교육세 0.8302\$(8.38\$×0.1)가 부과되었다. 따라서 통관 시 수입가격은 36.537\$가 되었다.

14) 국가별 포도주 수입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5	2006	2007	2008
프랑스	4,228	4,693	7,236	5,480
칠레	3,206	3,771	6,398	6,600
미국	3,136	4,042	4,763	3,838
스페인	3,006	3,353	5,029	4,577
이탈리아	1,524	1,895	3,292	3,660

15) ()안의 수치는 마진율을 의미하며, 동 숫자는 수입상 등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표 11〉 2005년과 2008년의 수입가격, 소비자가격 비교

		2005년도	2008년도	변화율
원산지가격		24\$(US)	27\$(US)	12.5%
관세율		15%	2.5%	△12.5%p
평균환율		1,043.41원/\$	1400원/\$	34.2%
수입단가		3,704원	3,710원	0.2%
소비자가격(부가세포함)	백화점	12,000	13,000	8.3%
	할인점	11,000	12,000	9.0%

즉, 수입상이 동일한 포도주를 3년 후에 수입하면서, 원산지가격이 12.5% 상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FTA로 관세가 15%에서 2.5%로 감축되면서, 통관 시 수입가격은 오히려 0.5% 인화된 가격으로 통관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08년도의 환율이 2005년보다 34.2%나 증가한 1,400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포도주의 실제 국내 소비자가격은 2005년의 경우보다 각각 8.3%와 9.0% 인상된 12,000과 13,000원에 원에 거래되었다.

위의 사례에서 2008년도 포도주의 수입단가는 2005년에 비하여 원산지가격 12.5%, 평균 환율 34.2% 등의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의 국내소비자가격은 원가상승요인보다 훨씬 낮은 8%-9%만 인상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FTA로 인한 관세감축이 장기적으로는 국내소비자가격을 인하시키고 있음을 실증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IV. FTA효과 반감 요인

1. 장기간에 걸친 관세 감축

FTA 양허내용은 품목에 따라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장기간에 걸쳐 매년 일정비율로 관세를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매년도마다 관세감축에 따른 수입상품의 원가인하 폭은 그리 크지 않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수입상들은 이를 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판촉비나 기타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⁶⁾ 따라서 일반소비자들이 관세감

16) 수입가격하락에 따라 라벨링 등의 가격관련표시사항 수정에 소요되는 비용(배뉴비용)이 실제로 가격을 인하한 이후에 기대되는 수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다.

축에 따른 가격인하효과를 단기간에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2.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1) 경쟁제한적인 유통구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입상품의 국내시장규모가 대부분 그리 크지 않아, 그 상품의 수입상이 소수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고급 포도주 등 일부 품목은 각 브랜드별로 한 사업자가 우리나라 수입을 독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쟁제한적인 유통구조는 수입상, 중간 유통상인간 담합 등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부 품목에서는 수입상이 시장상황을 보고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도매유통 마진율, 소매유통 마진율을 정하여 놓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유통업체의 과도한 유통마진

우리나라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점은 대부분 임대매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형 유통업체의 수수료가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한 조사¹⁷⁾에 의하면, 선진국에서 대형유통점의 판매수수료는 대부분 판매금액의 15% 미만이나, 우리나라는 15%-25%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형 유통점의 과도한 수수료와 함께 수입상 등 중간 유통단계에서의 마진율도 제 외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전반적으로 소비자가격 인하에 악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영세 수입상의 난립

일부 수입상품의 경우 영세한 수입상이 난립하고, 이들 수입상들이 수출상과의 과도한 구매경쟁으로 수입가격을 끌어 올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조사에 의하면, 칠레산 삼겹살 수입상의 경우, 연간 50만\$ 이하의 영세 수입업자가 전체 수입상의 60%¹⁸⁾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영세 수입상의 난립은 수출상과의 구매계약 시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떨어뜨리는 요인을 작용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수입가격을 지불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 조사에 의하면, 수입품목의 동질성이 강한 10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한·미·일 3개국의 평균수입단가(CIF가격 기준)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17) 한국무역협회·소비자시민모임·한국노총,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수입상품의 유통구조 개선방안」, 2007. 11.26

18) 2007년 당시 조사에 의하면, 전체 수입상 총 205개 중에서 50만\$ 이하의 수입상이 129개 사업자로 조사되었다.

서는 평균 14.7%, 미국에 비해서는 평균 24.3%나 높은 가격으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⁹⁾

3. 소비자의 인식

FTA의 경제적 효과는 단기간에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그리고 국가별로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수준 등은 천차만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특정국가에 대한 선입관²⁰⁾ 등에 의해서 수입상품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식은 FTA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시키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V. 결 론

자유무역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생산자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산업별로 분석한 자유무역의 경제적 효과에 기초하여, 국가경제전체 측면에서 무역자유화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를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모든 경제활동의 최종적인 목적이 소비에 있음을 감안할 때,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도 소비자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소비자측면에서 FTA가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자유무역이 소비자잉여를 증대시킨다는 것은 모두가 받아들이는 내용이다. 이것이 소비자측면에서 FTA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정부가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소비자입장에서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FTA가 소비자잉여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증가시켰는가를 품목별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통계자료 수집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거의 불가능하며, 이의 결과를 기초로 소비자를 이해시키는데도 용이하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FTA로 소비자후생이 증가될 수 있는 유형을 먼저 분석하고, 이를 우리나라와 FTA 체결이후 무역이 증가한 품목을 중심으로 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입증하고자 하였다. FTA가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유형과 사례는 바나나 등 열대성 과일과 같

19) 한국무역협회·소비자시민모임·한국노총, 상계서를 참조하였다.

20) 일반적으로 일본산은 고급으로, 중국산은 저급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부인할 수 없다.

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는 제품을 싸게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경우, 홍어, 주꾸미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량이 미미한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경우, 포도, 키위 등과 같이 국내 생산 비수기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 종전보다 다양한 품목의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 관세인하로 인한 수입상품과 국내가격이 인하되는 경우 등 크게 5가지 유형을 추출하고, 이에 대한 사례를 품목별로 살펴보았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통계자료의 수집 곤란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품목별로 구체적인 소비자잉여를 계측하지 못하였기에 분석방법상 문제점은 없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FTA가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정부의 FTA정책 추진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를 계기로 소비자입장에서 FTA가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되고, 품목별로 소비자잉여를 계측할 수 있는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FTA 효과의 반감요인을 기초로 유통구조의 개선,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화, 수입상간 가격담합행위 등 부당한 공동행위 근절 등의 정책이 개선되어, 소비자들이 FTA의 효과를 보다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준구·박지현,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대 칠레 교역동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연구시리즈 04-01, 2004.
- 고성은, 「한-칠레 FTA 발효 5년 평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09. 3.
- 관세청 보도자료, 「최근 삼겹살 및 과일·채소 가격 급등 국내 생산량 감소와 함께 수입량 감소가 한 몫」, 2006. 8.21.
- 기획재정부, 「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 후 2년간 교역동향 분석」, 2009.
- 김윤식, 「FTA를 하면 사회후생은 항상 증가하는가」, 「농촌경제」 30(6), 200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 체결 3년 평가 -농업분야」, 2007.6.
-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한-칠레 FTA 발효와 국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2004.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2003.3.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ASEAN FTA 주요 내용」, 2007.4.
- 한국무역협회·소비자시민모임·한국노총, 「FTA효과 극대화를 위한 수입상품의 유통구조 개

선방안」, 2007. 11.26.

KOTRA, 「한-칠레 FTA 5주년 성과와 시사점」, Global Issue Report, 09-006, 2009. 3.

Feenstra, R. C., and A. M. Taylor. *International Economics*. Worth Publishers Inc., 2008

Mehanna, R., and H, Shamsub, “Who Is Benefiting the Most from NAFTA? An Introduction Time Series Analysis,”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27, 2002.

Song, Wongun. “Import Demand Elasticities for Agricultural Products in Korea” presented at the Asia Pacific Economic Associ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Seattle, July 29, 2006.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 *The Impact on U.S. Industries and Consumers and on Drug Crop Eradication and Crop Substitution*, Publication 4037, 2008